2022년도 제19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'2022년도 제19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'을 「의료법」 제78조, 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2022년 5월 18일

대한간호협회장

1. 응시분야

· 가정, 감염관리, 노인, 산업, 아동, 응급, 임상, 정신, 종양, 중환자, 호스피스(총 11개 분야, 보건·마취 제외)

Ⅱ. 시험일정

구	분		일정	비고	
응시원서 접수	기간	2022. 5. 25.(수) 10:00 ~ 6. 3.(금) 18:00		· 1차시험 면제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자도 동일기간에 응시원서 접수 필요	
	방법	온라인 접수만 가능 (단,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추가서류 우편접수 병행)		·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「KNA 자격시험」 클릭	
서류심사 결과발표 및 수험표 출력		2022. 6. 22.(수) 14:00 이후		·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「KNA 자격시험」 클릭 ·수험표는 개별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	
	1차시험	일시	2022. 7. 23.(토) (1) 입실가능: 09:00부터 (2) 입실완료: 10:00까지 (3)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: 10:00 ~ 10:30 (4) 시험시간: 10:30 ~ 13:00(150분)	· 10:00 이후 입실 불가	
시청시해			장소	한양공업고등학교(서울시 중구 소재) (http://hanyang.sen.hs.kr)	· 주차 불가, 대중교통 이용
시험시행	2차시험	일시	2022. 8. 28.(일) (1) 입실가능: 09:00부터 (2) 입실완료: 10:00까지 (3)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: 10:00 ~ 10:30 (4) 시험시간: 10:30 ~ 12:10(100분)	· 2차시험 접수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응시수수료 납부로 갈음함. 납부기간: 2022. 8. 5.(금) 14:00 ~ 8. 12.(금) 18:00까지 · 1차시험 합격자, 면제자에 한하여	
		장소	한양공업고등학교(서울시 중구 소재) (http://hanyang.sen.hs.kr)	응시 가능	
동L 거 TI	-127 41-		2022. 8. 5.(금) 14:00 이후	·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	
합격자 발표		최종 2022. 9. 16.(금) 14:00 이후		「KNA 자격시험」 클릭 ·SMS 개별 통보(합격자에 한함)	

Ⅲ. 응시자격

구 분	자격기준
교육과정 수료(예정)생	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	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
1차시험 면제자	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

IV. 시험과목 및 방법

구 분	내 용		
시험과목	공 통	간호연구, 간호이론, 약리, 병리, 상급건강사정,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	
시엄파측	전 공	상급전문간호	
시설바Ħ	1차시험	필기시험(객관식 5지 선다형, 총 150문제 150점/ 1문제당 1점)	
시험방법 	2차시험	실기시험(시나리오 중심 서술형, 총 2사례 100점)	
시험기준 분야별		분야별 시험 출제기준(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	

V. 응시원서 접수

1. 응시원서 접수

· 기간: 2022. 5. 25.(수) 10:00 ~ 6. 3.(금) 18:00

∘ 방법: 온라인 접수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만 가능하며, 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「KNA 자격시험」 클릭한 후 접수

※ 단,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서류 우편접수 병행

자세한 사항은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 공지사항 '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계획 공고'참조

• 1차시험 면제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도 응시원서 접수 필요

2. 제출서류

구분	교육과정 수료(예정)생, 1차시험 면제자	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(응시자격 심사 접수자)	비고
응시원서	응시원서(온라인 작성)	응시원서(온라인 작성)	
첨부서류	 수료증 사본 및 수료(예정)증명서 [양식1]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 서식] 수료예정증 제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수료증 사본으로 재제출 하여야 함. 간호사 면허증 사본 실무경력 확인서[양식 2] 증명서류(재직 또는 경력증명서)는 응시서류로 제출하지 않음. 1차시험 응시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	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심사 신청서 1) 2 자격증 사본(*아포스티유 확인) 3 해당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4 교육 수료증 또는 졸업증명서 (*아포스티유 확인) 5 교과과정표(curriculum) 및 교수요목(syllabus) 6 기타 추가 요청자료(개별통지) 7 응시자격 심사수수료 및 1차시험 응시수수료 납입 증명서류	1)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계획 공고 참조 ※ 스캔 파일첨부 (jpg, PDF 등)

- ※ 제출서류는 발행일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한함.
- ※ 납입 증명서류: 인터넷뱅킹 거래화면 캡처 파일,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 거래명세서 스캔 파일 등 (거래일시, 입금자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.)

3. 서류심사 결과 및 수험표 확인

- 서류심사 결과 및 수험표는 2022.6.22(수) 14:00 이후 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「KNA 자격시험」통해확인 가능함.
- 수험표는 응시자가 개별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

4. 응시수수료

1) 납부방법: 계좌이체

구분	대상	응시수수료	납부기간	입금계좌
	교육과정 수료(예정)생	300,000원	2022. 5. 25.(수) 10:00 ~ 6. 3.(금) 18:00	하나은행 153-910017-26104 (예금주: 대한간호협회)
1차 시험	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	330,000원 (응시자격 심사 수수료 포함)		
2차	1차시험 합격자	200 000 91	2022. 8. 5.(금) 14:00	
시험	1차시험 면제자	300,000원	~ 8. 12.(금) 18:00	

- ※ 1차시험, 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납부기간에 각각 납부 하여야함.
- ※ 1차시험 면제자는 2차시험 납부기간에만 응시료 납부 함.
- ※ 입금 시 반드시 응시분야명(2글자)과 응시자 본인 명으로 입금하여야 함.예) 가정분야 응시자 김○○ → "가정김○○", 감염관리분야 응시자 이○○ → "감염이○○"
- ※ 접수기간 내에 응시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.

2)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

∘ 응시수수료의 반환은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9조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.

(1)개인 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

구 분	사 유	환불 금액	제출서류
	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	과오납한 금액의 전부	
	응시원서 접수기간 내(5.25. ~ 6.3.) 취소	나이하 오시스스리이 저브	응시수수료
1 뒤 시 줘	시험 시행일 20일 전(6.4. ~ 7.3.) 취소	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	반환요청서
1차시험	시험 시행일 10일 전(7.4. ~ 7.13.) 취소	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	
	시험 시행일 9일 전(7.14. ~) 부터 취소	응시수수료 환불 불가	
	납부기한 내(8.5. ~ 8.12.)	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	응시수수료
2차시험	시험 시행일 10일 전(8.13. ~ 8.18.)	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	반환요청서
	시험 시행일 9일 전(8.19. ~)부터	응시수수료 환불 불가	

(2)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

사유	환불금액	신청기한	제출서류
•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			가족관계증명서류 (재적사실 포함), 사망진단서
•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, 전염성 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 우(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	납입한	시험일 후	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
•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민법 제7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사망	응시수수료 전부	30일까지	가족관계증명서류 (재적사실 포함), 사망진단서(필요시)
• 본인, 형제, 자매,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			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
• 천재지변 또는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 는 경우			개별안내

- ※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.
- ※ 환불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.
- ※ 협회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협회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- 2.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- ※ 수수료 환불은 협회 회계 규정에 따라 매달 15일과 말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응시수수료 반환요청서 접수 시기에 따라 실제 환불일은 달라질 수 있음.

VI. 합격자 결정 및 발표

- 1. 합격자 결정
 - ∘ 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.

2. 합격자 발표

-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: 2022. 8. 5.(금) 14:00 이후
- 최종 합격자 발표일: 2022. 9. 16.(금) 14:00 이후 (합격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「KNA 자격시험」에서 확인, 합격자는 SMS 개별 통보)

Ⅶ. 기타 유의사항

- 반드시 [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]과 [응시자 유의사항]을 숙지하도록 함.
-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성명, 면허번호, 생년월일 등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,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
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.
-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취소를 하는 경우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서 응시수수료 반환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자격시험 담당자 전자우편(exam@koreanurse.or.kr)으로 발송
- 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일어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.
- ∘ 답안카드 열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 '공지사항'을 통해 확인 가능함.
- 문의: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(☎02-2206-1935, ⊠ exam@koreanurse.or.kr)

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

○ 응시원서 작성방법

1. 응시원서는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, 제출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파일(jpg. PDF 등)로 첨부함.

제출서류	내 용		
수료(예정)증	[양식 1]에 기관장이 작성, 기관장 직인(스캔파일 첨부)		
간호사 면허증 사본	스캔파일 첨부		
실무경력 확인서	[양식 2]에 응시자가 작성 및 서명, 기관장 직인(스캔파일 첨부)		
응시수수료 납입 증명서류	스캔파일 첨부(예: 인터넷뱅킹 거래화면 캡처파일, 현금자동 입출금기(ATM) 거래 명세서 스캔파일 등)		

- 2. 증명사진은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, 50KB 이하의 파일(jpg.)을 첨부 (※ 증명사진은 시험장에서 응시자 확인 시 사용됨).
- 3. '면허번호'는 간호사 면허번호 기재, '면허취득일'은 간호사 면허증에 기재된 년, 월, 일을 기재함.
- 4. '성명'은 '한글'과 '한문'으로 기재함(※ 한글 이름의 경우 한글로만 기재).
- 5. '국적'은 '대한민국'으로,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국명을 정확히 기재함.
- 6. '응시분야'는 해당 전문간호사 분야를 기재함.
- 7. '응시구분'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.
 - 1차 응시(국내): 2022년도 최초 응시자
 - 1차 응시(국외):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자
 - 1차 면제(국내): 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
- 8. '응시자격 구분'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.
 - 수료생: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자
 - 교육과정생: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 예정자
 - 외국자격자: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인정 심사 접수자
- 9. '현주소'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함.
- 10. '자택전화', '휴대전화', '이메일'은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.

※ 시험 관련 공지 안내를 위해 정확한 휴대번호와 이메일을 기입하며, 연락처 변경 있을 시 별도 연락함.

- 11. '학력'은 학위별로 취득연월일과 수여대학을 정확히 기재함.
- 12. '교육기간'은 교육개시 년, 월, 일(입학일자) ~ 교육수료 년, 월, 일(수료 혹은 예정일자) (예: 2019년 9월 2일 ~ 2022년 2월 28일)로 기재하고, 수료(예정)증에 기재한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.
- 13. 교육기관명을 정확하게 선택함.
- 14. '등록번호'는 교육기관에 등록 시 부여받은 학번을 기재함.
- 15. '현금영수증 신청'은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, 신청 시에는 '개인소득공제용' 또는 '사업자증빙용'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함.
- 16. '직장명'과 '근무부서'는 현 직장을 의미하며, '근무기간'은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총 근무기간을 의미함. 현 직장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.

○ 수료(예정)증 작성방법 [양식 1]

- 1.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'제 호'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(기재 필수).
- 2. 교육개시 년, 월, 일(입학일자) ~ 교육수료 년, 월, 일(수료 혹은 예정일자)(예: 2019년 9월 2일 ~ 2022년 2월 28일)로 정확히 기재하고, 응시원서의 '교육기간'과 일치하여야 함.
- 3. '교육기관장'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여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.
- 4. '수료예정증' 제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'수료증' 사본으로 재제출하여야 함.

○ 실무경력 확인서 작성방법 [양식 2]

- 1. '교육개시일'은 입학일자로 함.
- 2. '근무기간' 및 '근무일수'를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함.
 - ※ 교육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실무경력만 기재함.
- 3. '부서명'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(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관련, [별표 1])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함.

[별표 1]

분야	실무경력인정기관
가정	□의료기관 □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□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감염 관리	□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□종합병원
	□의료기관
	□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노인	□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	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마취	□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, 회복실,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
보건	□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	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	□ 사업장 의무실・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
	□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
산업	□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(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	□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공단, 대한산업보건협회, 한국노동연구원, 노동건강연구소, 한국산업간호협회, 근로복지공단(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	□종합병원
	ㅁ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아동	ㅁ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
	□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시설
	ㅁ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
	□응급의료기관
응급	ロ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구급・구조대
	□종합병원
	口군병원(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)
임상	□종합병원(심장・호흡기계, 소화기계, 신경・근골격계, 비뇨・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정신	□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□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종양	│ □ 종합병원
	□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(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중환자	□종합병원(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OEA	□300병상 이상의 군병원(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)
	□의료기관(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)
호스피스	□종합병원
	□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[※] 위 표에서 '감염관리' 및 '응급'분야의 종합병원,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% 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.

- 4. 실무경력 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'작성일자'와 '응시자'의 성명을 기재 후 서명(또는 도장) 해야 함.
- 5. '교육기관장'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하며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함.

응시자 유의사항

- 1. 시험문제,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음.
- 2. 응시자 준비물: 신분증, 수험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, 삼색볼펜 등), 수정테이프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
신분증의 범위

주민등록증(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, **장애인등록증**(장애인복지카드), **운전면허증**, 여권(만료일 이내), **공무원증**,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신고증)

- 3.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10시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.
 -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.
 - 수험번호별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실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.
 - 수험표를 분실한 자는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,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.
 - 응시자의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.
 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음.
 - 시험실에 시계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반드시** 확인 바람(스마트 워치 등 계산, 통신이 가능한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하며,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).
 - 시험시간 중에는 <u>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</u>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(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).

4. OMR답안카드 작성법

- 성명, 분야를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함.
- 고사실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먼저 기입하고, 해당 숫자 해당란에 '●'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.

- 답안 표기 방법 예시

바르게 표기한 것		잘못 표기한 것
	00●0●0	2곳에 표기한 것
	20●000	반만 표기한 것, 불완전한 수정처리
0000•	800000	지운 흔적이 있는 것, 불완전한 수정처리
	Θ	주위만 표기한 것
	800000	가운데만 표기한 것

5.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

-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, 기타 필기도구(연필, 적색펜 등)를 사용할 경우 해당문제가 'O점' 처리될 수 있음.
 - ※ OMR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,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,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, 특히,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OMR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됨.
- OMR답안카드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.
-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,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.
-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OMR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음. 다만, 답안카드 교체 시, 답안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- OMR답안카드는 <u>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</u>,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-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제를 '0점'처리함.
-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.
- <u>OMR답안카드 및 실기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, 상이하게 표기하여 발생하는</u>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.
- 실기답안 작성 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기입함.
- 실기답안 수정 시 적색펜으로 두 줄을 긋고 흑색으로 다시 재작성함(수정테이프 사용불가).

6. 부정행위자 관련사항

-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(휴대전화기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디지털카메라, 라디오, 결제[통신기능 블루투스, 스마트기기 등)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.
- 시험 전摩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,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,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.
- 시험 종료 후에는 OMR답안카드 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해야 함.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, 수험표 등에 문제 및 정답을 적어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. 아울러 <u>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</u>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<u>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OMR답안카드나 답안지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</u> 처리될 수 있음.
-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협회 「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 규정」에 따라 그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.

부정행위자 처리 「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 규정」 제24조

- ①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대화하는 자
 - 2.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서로 교환하는 자
 - 3.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풀이 과정을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자
 - 4.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거나 답안을 제공한 자
 - 5. 시험 중 시험 내용과 관련된 교재 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한 자
 - 6. 고사장 내외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자
 - 7.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자
 - 8.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 - 9. 대리 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 - 10. 문제 및 답안을 수험표, 책상 등에 옮겨 적는 행위 등을 한 자
 - 11.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자
 - 12.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- ② 응시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,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리고 즉시 퇴실시키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부정행위자 조서에 따라 시험본부에 보고한다.

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기준 및 조치 「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」 제5조

- ① 협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- 1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
 - 2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
 - 3.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
 - 4.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
 - 5.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,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 - 6.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
 - 7. 그밖에 협회가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

- 7.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
-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(응시 제한) 시험당일 [2022. 7. 23.(토), 8. 28.(일)] 코로나19 확진환자, 의사환자* 등 입원치료통지서
 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- * 의사환자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- 단, 방역당국의 별도지침 통보가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KNA 자격시험」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 - ※ (시험장 입장)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.
 - 시험장 입구는 하나로 통제되며, **체온측정**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 (※ 입실 시간: 09:00~10:00)
 -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고, 응시가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.
 - ※ (생활 속 거리두기)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 - ※ (마스크 착용)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당일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.
 단.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 - ※ (손소독제 사용)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입실하고 화장실 이용 후에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 - ※ (에티켓 준수) 시험실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 - * (창문 개방) 시험실 내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. 단, 당일소음, 기후상태 등에 따라 항상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.
 - ※ (시험장 퇴장) 시험 종료 후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시험실별 차등 퇴실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.
 - 시험실별 차등 퇴실로 인하여 퇴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교통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8.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튱을 이용하기 바람.
- 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(exam@koreanurse.or.kr)로 문의

10. 오시는 길

-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, 한양공업고등학교

- 대중교통: (지하철) 2, 4,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(도보 1분)

(버 스) 아래 약도 참조(정류장명, 정차하는 버스번호)

- 약 두



끝.

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12.31.>

제 호
수료(예정)증
성 명: 생년월일: 간호사면허증번호 제 호
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()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(예정)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년 월 일
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 (○○대학교 ○○대학원장)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²]

실무경력 확인서

성 명	응시분야	교육기관	교육개시일(입학일)								
			년 월 일								
해당 실무 경력 내용											
근무기간 (년,월,일 - 년,월,일)	근무일수 ()년()개월()일	기관명	부서명								
해당실무 총 근무 일수(환산계) : ()년 ()개월 ()일											

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00	시	자				(서)	명 또는 인)
		=	-	육기) () 다	 _		직인